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

기관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교육구분	성희롱 방지조치	출력일	2026-01-09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	시행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 · 심화교육 이수	O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 )이 5인 미만일 경우 남 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이수자로 인정 ** ('24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5년 상반기 교육이수, ('25년 상반기 신규지정) '25년 하반기 교육이수, ('25년 하반기 신규지정) '26년 상반기 교육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고충 상담창구 설치	O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으로 인정 - '사이버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O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 성폭력 통합 예방지침도 인정

성폭력 예방조치

평가항목	시행여부	비고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O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6.5 개정, '16.11 시행)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

기관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교육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출력일	2026-01-09

*부진기관 기준

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종사자 참여율 80%미만 ③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⑤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

평가항목	세부배점	획득점수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기본계획 미수립(0점)	수립 / 10점
	기본계획 수립(10점)	
기관장 참여	미이수(0점) *부진기관	이수 / 10점
	이수(10점)	
고위직 참여율	50%미만(0) *부진기관	100% / 25점
	50~70%미만(5점) *부진기관	
	70~90%미만(15점) *80%미만, 부진기관	
	90%이상(25점)	
종사자 참여율	50%미만(0점) *부진기관	99% / 30점
	50%~70%미만(10점) *부진기관	
	70%~80%미만(20점) *부진기관	
	80%~90%미만(25점)	
	90%이상(30점)	
신규자 참여율 ※신규자가 없는 경우 3점	70% 미만(0점)	100% / 3점
	70% 이상(3점)	
비정규직 참여율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2점	70% 미만(0점)	94% / 2점
	70% 이상(2점)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5점)	전문강사교육 / 20점
	내부직원교육(10점)	
	일반강사교육(15점)	
	전문강사교육(20점)	
가점1.기관 내 사례토론, 세미나 등 교육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8점)	미실시 / 0점
가점2.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사용(2점)	미사용 / 0점
가점3.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점)	제출 / 5점
가점4.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점)	미제출 / 0점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시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105점**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

기관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교육구분	성매매 예방교육	출력일	2026-01-09

*부진기관 기준

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종사자 참여율 80%미만 ③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⑤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

평가항목	세부배점	획득점수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기본계획 미수립(0점)	수립 / 10점
	기본계획 수립(10점)	
기관장 참여	미이수(0점) *부진기관	이수 / 10점
	이수(10점)	
고위직 참여율	50%미만(0점) *부진기관	100% / 25점
	50~70%미만(5점) *부진기관	
	70~90%미만(15점) *80%미만, 부진기관	
	90%이상(25점)	
종사자 참여율	50%미만(0점) *부진기관	99% / 30점
	50%~70%미만(10점) *부진기관	
	70%~80%미만(20점) *부진기관	
	80%~90%미만(25점)	
	90%이상(30점)	
신규자 참여율 ※신규자가 없는 경우 3점	70% 미만(0점)	100% / 3점
	70% 이상(3점)	
비정규직 참여율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2점	70% 미만(0점)	94% / 2점
	70% 이상(2점)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5점)	전문강사교육 / 20점
	내부직원교육(10점)	
	일반강사교육(15점)	
	전문강사교육(20점)	
가점1.기관 내 사례토론, 세미나 등 교육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8점)	미실시 / 0점
가점2.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사용(2점)	미사용 / 0점
가점3.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점)	미제출 / 0점
가점4.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점)	미제출 / 0점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시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100점**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

기관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교육구분	성폭력 예방교육	출력일	2026-01-09

*부진기관 기준

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종사자 참여율 80%미만 ③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⑤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

평가항목	세부배점	획득점수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기본계획 미수립(0점)	수립 / 10점
	기본계획 수립(10점)	
기관장 참여	미이수(0점) *부진기관	이수 / 10점
	이수(10점)	
고위직 참여율	50%미만(0) *부진기관	100% / 25점
	50~70%미만(5점) *부진기관	
	70~90%미만(15점) *80%미만, 부진기관	
	90%이상(25점)	
종사자 참여율	50%미만(0점) *부진기관	99% / 30점
	50%~70%미만(10점) *부진기관	
	70%~80%미만(20점) *부진기관	
	80%~90%미만(25점)	
	90%이상(30점)	
신규자 참여율 ※신규자가 없는 경우 3점	70% 미만(0점)	100% / 3점
	70% 이상(3점)	
비정규직 참여율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2점	70% 미만(0점)	94% / 2점
	70% 이상(2점)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5점)	전문강사교육 / 20점
	내부직원교육(10점)	
	일반강사교육(15점)	
	전문강사교육(20점)	
가점1.기관 내 사례토론, 세미나 등 교육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8점)	미실시 / 0점
가점2.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사용(2점)	미사용 / 0점
가점3.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점)	제출 / 5점
가점4.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점)	미제출 / 0점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시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105점**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결과 확인

기관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교육구분	가정폭력 예방교육	출력일	2026-01-09

*부진기관 기준

①점검기준표 합계 총 70점 미만 ②종사자 참여율 80%미만 ③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⑤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함

평가항목	세부배점	획득점수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기본계획 미수립(0점)	수립 / 10점
	기본계획 수립(10점)	
기관장 참여	미이수(0점) *부진기관	이수 / 10점
	이수(10점)	
고위직 참여율	50%미만(0) *부진기관	100% / 25점
	50~70%미만(5점) *부진기관	
	70~90%미만(15점) *80%미만, 부진기관	
	90%이상(25점)	
종사자 참여율	50%미만(0점) *부진기관	99% / 30점
	50%~70%미만(10점) *부진기관	
	70%~80%미만(20점) *부진기관	
	80%~90%미만(25점)	
	90%이상(30점)	
신규자 참여율 ※신규자가 없는 경우 3점	70% 미만(0점)	100% / 3점
	70% 이상(3점)	
비정규직 참여율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2점	70% 미만(0점)	94% / 2점
	70% 이상(2점)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5점)	전문강사교육 / 20점
	내부직원교육(10점)	
	일반강사교육(15점)	
	전문강사교육(20점)	
가점1.기관 내 사례토론, 세미나 등 교육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8점)	미실시 / 0점
가점2.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사용(2점)	미사용 / 0점
가점3.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점)	미제출 / 0점
가점4.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점)	미제출 / 0점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시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100점**